

목 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1
주식교환 · 이전 결정	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6년 8월 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KB금융지주
대 표 이 사 : 윤 종 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84 (을지로2가)
 (전 화) 02) 2073-7114
 (홈페이지) <https://www.kbfg.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장 (성 명) 권봉중
 (전 화) 02) 2073-2843

주식교환 · 이전 결정

1. 구분		주식교환		
- 교환 · 이전 형태		소규모		
2. 교환 · 이전 대상법인	가. 회사명	현대증권 주식회사 (Hyundai Securities Co., Ltd.)		
	나. 대표자	윤경은		
	다. 주요사업	금융투자업		
	라.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마.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236,612,530	
		종류주식	-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	자산총계	23,779,133,232,743	
		부채총계	20,477,158,998,479	
		자본총계	3,301,974,234,264	
		자본금	1,183,062,650,000	
3. 교환 · 이전 비율		(주)KB금융지주 : 현대증권(주) = 1 : 0.1907312		

4. 교환 · 이전 비율 산출근거	<p>(주)KB금융지주(이하 'KB금융지주'이라 한다)와 현대증권(주)(이하 '현대증권'이라 한다)는 모두 주권상장법인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및 제176조의6 제2항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습니다.</p> <p>주식교환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2016년 08월 02일)과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일(2016년 08월 02일) 중 앞서는 날의 전일(2016년 08월 01일)을 기산일로 한 최근 1개월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 1주일간 가중산술평균종가, 최근일의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p> <p>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상술한 방법으로 산출된 가액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평가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습니다.</p> <p>(1)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KB금융지주)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6.07.02~2016.08.01) : 34,600원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6.07.26~2016.08.01) : 36,171원 -최근일 종가(2016.08.01) : 35,650원 -산술평균가액 : 35,474원 -교환가액 : 35,474원</p> <p>(2)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현대증권)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2016.07.02~2016.08.01) : 6,604원 -최근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2016.07.26~2016.08.01) : 6,834원 -최근일 종가(2016.08.01) : 6,860원 -산술평균가액 : 6,766원 -교환가액 : 6,766원</p>										
5.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table border="1"> <tr> <td data-bbox="336 1451 699 1496">외부평가 여부</td> <td data-bbox="699 1451 1466 1496">미해당</td> </tr> <tr> <td data-bbox="336 1496 699 1715">- 근거 및 사유</td> <td data-bbox="699 1496 1466 1715">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td> </tr> <tr> <td data-bbox="336 1715 699 1760">외부평가기관의 명칭</td> <td data-bbox="699 1715 1466 1760">-</td> </tr> <tr> <td data-bbox="336 1760 699 1805">외부평가 기간</td> <td data-bbox="699 1760 1466 1805">-</td> </tr> <tr> <td data-bbox="336 1805 699 1850">외부평가 의견</td> <td data-bbox="699 1805 1466 1850">-</td> </tr> </table>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본 주식교환은 주권상장법인간의 주식교환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5 및 제176조의6에 따라 교환가액을 산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교환비율을 산출하였으므로,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하여 교환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6. 교환 · 이전 목적	현대증권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여 경영상의 효율성 증대와 KB금융그룹 일체성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7. 교환·이전의 중요영향 및 효과		<p>(1)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p> <p>본 주식교환 완료 시 KB금융지주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주식교환 비율에 따라 희석화되는 효과는 있으나, 지배구조 관련 경영권의 변동은 없으며, KB금융지주 및 현대증권은 독립된 존속법인으로 유지됩니다.</p> <p>또한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본건 주식교환 이전에 취임한 KB금융지주 이사 및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는 상법 제360조의13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하며, 본건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되는 임원은 없습니다.</p> <p>(2) 회사의 재무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p> <p>KB금융지주의 경우 신주 발행에 따른 유상증자 효과로 자본 확충 및 일부 그룹 경영지표(ROE, 이종레버리지비율, 부채비율 등)의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현대증권의 경우 자산 및 부채의 변동 없이 오직 주주 구성만 변동되거나 KB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가 되므로 인해 신용도 상승에 따른 자금조달비용의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 <p>(3) 회사의 영업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p> <p>KB금융그룹 계열사간 시너지 극대화를 통해 고객의 편익과 영업경쟁력 강화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p>	
8. 교환·이전일정	교환·이전계약일	2016년 08월 02일	
	주주확정기준일	2016년 08월 12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2016년 08월 13일
		종료일	2016년 08월 18일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16년 08월 09일
		종료일	2016년 08월 22일
	주주총회 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교환·이전일자	2016년 11월 09일	
	신주권교부예정일	2016년 11월 21일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6년 11월 22일		
9. 교환·이전 후 완전모회사명	주식회사 KB금융지주 (KB Financial Group Inc.)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60조의10의 규정에 의거하여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KB금융지주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 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6년 08월 0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6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예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KB금융지주의 경우 상법 제360조의10에 따라 소규모 주식교환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상법 제360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에 갈음하여 이사회 의 승인으로 본건 주식교환을 진행합니다.

(2) 상법 제360조의10 제5항에 따라 KB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경우, 본건 소규모 주식교환 절차가 일반 주식교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3) 상기2항의 '교환·이전 대상법인'의 '바. 최근 사업연도 요약재무내용(원)'은 2015년 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주식의 포괄적 교환 계약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이 변경되거나 해제될 수 있습니다.

①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후 당사회사인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주식교환일 전에는 언제라도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의 조건과 관련된 사항이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상호 합의하여 관계 법령과 회계기준에 적합하게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③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후 KB금융지주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지는 주주가 주식교환의 공고 또는 통지를 한 날(그 기준일)로부터 7일 내에 서면으로 본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본 주식교환에 따른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현대증권이 그 주주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대금(현대증권이 제안한 주식매수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의 합이 금 7,7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주식교환을 위하여 필요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본건 정부승인을 획득하지 못하거나, 본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치유할수 없는 법령 위반의 결과를 초래하여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본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⑥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 체결 후 주식교환일까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협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천재지변 등 기타 KB금융지주 또는 현대증권의 재산 및 경영상태에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 주식교환비율의 불공정 등 기타 본 주식교환 계약의 교환비율을 존속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⑦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본건 주식교환을 위하여 합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별도 협약은 본 계약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⑧ 본건 주식교환 계약이 ①~⑦에 따라 해제되는 경우 KB금융지주, 현대증권 및 그 주주, 임직원, 대리인 기타 대표자는 본 계약상 또는 본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5) 상기 사항 및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나 승인 및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교환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